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등록되면, 일반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 무심사등록출원도 설정등록 되고 나면 일반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 이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
- 즉,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된 날로부터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디자인권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 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출원 시 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부분디자인 출원 시 도면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재요령)
  - 가. 부분디자인을 도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 나.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
    -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써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 물품전체의 색채가 검정색인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칠함으로써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의 색채를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 다.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
    -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써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 사진이나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